

第 151 回 臨時會

第3次 保健社會委員會

2004年度第1回福祉女性局所管追加更正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2004. 9. 8(水)

保健社會委員會專門委員

# 목 차

I. 제안경위 .....	1
II. 서울특별시 예산 규모 .....	1
III.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1
1. 추가경정 예산 개요 .....	1
2. 신규·증액 및 감액사업 .....	3
3. 추경예산안 증액요인 분석 .....	3
IV. 검토의견 .....	4
1. 시립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	4
2.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	5
3.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	6
4.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	7
5.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9
6. 장애인콜택시 운영 .....	10
7.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	11
8. 시립아동병원 신축 .....	12
9. 시립동부병원 운영보조 .....	13

#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47
------	-----

## I. 제안경위

-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 8. 19. 서울특별시장이 우리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4. 8. 23.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II. 서울특별시 예산 규모

- 총계규모 \_\_\_\_\_ 1조 5,685억원
- 순계규모(회계간 전출입 1,301억원 제외) \_\_\_\_\_ 1조 4,384억원

<표1> 200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추경	추경예산안	증감율(%)			
<b>예</b>	<b>산</b>	<b>총</b>	<b>계</b>	<b>14,200,363</b>	<b>1,568,546</b>	<b>15,768,909</b>	<b>11.0</b>	
○	일	반	회	계	9,852,402	1,369,507	11,221,909	13.9
○	특	별	회	계	4,347,961	199,039	4,547,000	4.6
<b>예</b>	<b>산</b>	<b>순</b>	<b>계</b>	<b>12,882,907</b>	<b>1,438,395</b>	<b>14,321,302</b>	<b>11.2</b>	
○	일	반	회	계	8,550,107	1,239,356	9,789,463	14.5
○	특	별	회	계	4,332,800	199,039	4,531,839	4.6

## III.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1. 추가경정예산 개요

- 일반회계 \_\_\_\_\_ 24개 사업 201억원
- 특별회계 \_\_\_\_\_ 1개 사업 53억원

<표2> 2004년도 복지여성국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추경	추경예산안	증감율(%)
<b>예</b>	<b>산</b>	<b>1,597,229</b>	<b>25,425</b>	<b>1,622,654</b>	<b>1.6</b>
◦	일 반 회 계	1,295,229	20,136	1,315,365	1.6
◦	특 별 회 계	302,000	5,289	307,289	1.8

- 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 증액규모는 254억 2,5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증액 규모 1조 5,685억 4,600만원의 1.6%이며, 추경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임

<표3> 2004년도 복지여성국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추경	추경예산안	증감율(%)
<b>예</b>	<b>산</b>	<b>1,597,229</b>	<b>25,425</b>	<b>1,622,654</b>	<b>1.6</b>
◦	시민 기초생활 보장	771,625	8,396	780,021	1.1
◦	민간참여의 사회복지 체계 인프라 강화	46,302	-	46,302	-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14,659	170	14,829	0.1
◦	소외 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	51,421	1,784	53,205	3.5
◦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해결	149,171	-	149,171	-
◦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164,880	1,845	166,725	1.1
◦	장묘문화 개선	37,250	-	37,250	-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205,518	13,188	218,706	6.4
◦	시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	8,585	-	8,585	-
◦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	67,408	42	67,450	0.1
◦	일반예산	80,410	-	80,410	-

## 2. 신규·증액 및 감액사업

- 신규·증액사업은 24개 사업이며, 이 가운데 기정예산이 없는 신규 사업은 시립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보건소 분소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임
  -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가운데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4> 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및 5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추경	추경예산안	증감율(%)
○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49,645	2,644	152,289	1.8
○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302,000	5,289	307,289	1.8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4,797	1,393	6,190	29.0
○ 노인 일자리 사업		1,089	1,409	2,498	129.3
○ 승강 편의시설 확충 공사		64,333	11,756	76,089	18.3
○ 시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	2,601	2,601	100.0
○ 시립동부병원 운영 보조		4,489	1,717	6,206	38.2

- 감액사업은 시립아동병원 신축사업으로 기정예산 50억 4,6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음

<표5> 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 감액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추경	추경예산안	증감율(%)
○ 시립아동병원 신축		5,046	△5,046	-	△100.0

## 3. 추경예산안 증액요인 분석

- 복지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당초 예산 편성시에 비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였고,
- 기정예산에 없었던 추가사업이 포함·반영되었으며,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IV. 검토의견

##### 1. 시립은평의마을 기능보강(사업별설명서 p.93)

- 본 사업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 계획」에 따라 시립은평의마을 제3생활관을 장애인생활시설로 기능 전환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표6> 시립은평의마을 시설 세부현황

대 지	건			물	
	계	제1생활관	제2생활관	제3생활관	작업동
40,469㎡	19,730㎡	5,857㎡ 지하1, 지상5층 (670명 보호)	9,700㎡ 지하1, 지상5층 (990명 보호)	3,208㎡ 지하1, 지상3층 (280명 보호)	965㎡ 지상2층

<표7> 대형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 계획

구 분	시 설 개 요		기능분화 계획	
	위치	수용정원	2004년도	2005년도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구산동	2,000명(남성)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시립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1,000명(여성)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

- 지금까지 부랑인복지시설에서는 정상인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혼합 보호되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시설의 기능분화 시책’은 이러한 단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기능전환에 따라 공사기간(수개월 소요) 중에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부랑인의 이전·보호대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시립은평의마을의 경우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는 제3생활관에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많은 결핵환자를 서대문병원으로 이동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년 4월 현재 서대문병원 결핵 병동 240병상 중 164병상이 기존 입원환자로 채워져 있어 활용 가능한 병상이 76병상밖에 안된다는 점과 결핵환자의 경우 전염의

우려 때문에 다른 부랑인과 같이 보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표8> 시립서대문병원 병상가동율 현황(2004. 4월)

구	분	계	결핵병동	노인병동	치매병동	
병	상	수	530	240	200	90
입	원	환	318	164	89	65
가	동	율	60%	68%	45%	72%

## 2.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사업별설명서 p.95)

- 쪽방 밀집지역 거주자는 2004년 6월 현재 7개 지역 3,182명이며 대부분 노숙자와 경계를 이루는 도시 빈민으로 40대 이상의 독거 장년·노인층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월수입 30만원 이하의 극빈층은 40%에 이르고 있음

<표9> 쪽방 밀집지역 및 쪽방상담소 현황

구	분	쪽방지역	쪽방건물수	쪽방수	쪽방거주자	쪽방상담소
합	계	7개 지역	367	4,101	3,182	5개소
종	로	구의동, 창산동	150	1,288	986	2개소
중	구	회현동	69	1,193	935	1개소
용	산	동자동, 갈월동	51	1,061	759	1개소
영	등	영등포2동, 문래1동	97	559	502	1개소

-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쪽방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부분으로 쪽방상담소가 개별 상담을 통해 쪽방거주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무료 급식, 무료 이·미용서비스, 무료세탁, 무료 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음
- 다만 최근에 자치구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들 쪽방을 철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쪽방이 저소득 시민, 노숙인 등 빈곤계층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므로 쪽방을 철거하기에 앞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실현 가능한 이전·이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영등포 쪽방밀집 지역처럼 최빈곤층의 주거지로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은 별도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한시적이라도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쪽방거주자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자나 독신생활자가 많아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지역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재정 투자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3.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사업별설명서 pp.96~97)

- 최근 5년간 의료보호비 집행실적을 보면 대체로 그 지출액이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음

<표10> 1999~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집행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 추경
합	계	150,862	180,771	288,424	265,402	282,214	307,289
관	리	257	398	614	858	874	956
의	료	150,605	180,373	287,810	264,544	281,340	306,333
보	호						
비							

-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의료보험 수가나 의약품 가격의 상승 등 물가 상승에 의한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인의 경우 급성환자(急性患者)보다는 만성환자(慢性患者)가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의료비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인 외에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질병임에도 병원을 찾는 과잉 진료현상이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



- 실제로 지난해 연간 700일 이상 진료를 받은 의료보호 환자는 4,898명으로, 대부분 정신질환 및 노인성 질환자로서 같은 진료기관에서 같은 날 2개 이상 진료과목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
- 의료보호 환자의 과잉 진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결국 환자 자신에게도 약물남용이나 항생제 과다복용 등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진료일수가 많은 의료보호환자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들을 특별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잉진료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환자의 모든 질병과 진료정보 등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어떤 병원을 가든지 개인병력 자료를 토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의료보호 환자의 과잉 진료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4.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사업별설명서 p.98)

- 여성발전센터는 2004년 5월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를 민간이 수탁(受託) 운영하게 됨으로써 서울시 5개 여성발전센터가 모두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들어갔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표11>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현황

구 분	동 부	서 부	중 부	남 부	북 부
위 치	광진구 노유동	양천구 신월동	마포구 용강동	금천구 시흥동	노원구 중계동
규 모	대지 1,003평 건물 2,244평	대지 470평 건물 1,052평	대지 632평 건물 1,190평	대지 4,586평 건물 1,796평	대지 1,500평 건물 1,242평
민 간 위 탁 기 간	2002.5~2005.4	2002.12~2005.11	2003.10~2006.10	2004.5~2007.4	2004.5~2007.4
운 영 주 체	(재)서울여성	(사)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재)청년여성문화원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사)한국여학사협회

- 예산은 '1년간의 재정계획(Annual Plan)'으로 시민에게 서울시가 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공개문서(公開文書)이며, 특히 민간위탁금의 경우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해서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을 변경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동부·서부·중부 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여 이를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비용에 활용하고, 그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는 투자전략을 취함으로써 일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처럼 보이지만, 여성발전센터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이 아니라 단지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항목의 전체 사업비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각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추진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겠음

<표12>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성과사업 추가소요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부	서 부	중 부	남 부	북 부
수입추계 (C=A+B)	3,081,457	1,569,451	811,369	424,611	142,596	133,430
- 이월금(A)	323,476	273,031	23,773	36,672	-	-
- 당해연도 수입(B)	2,757,981	1,296,420	787,596	397,939	142,596	133,430
민 간 위 탁 금 (D)	3615,575	735,896	714,244	960,901	635,473	569,061
사 업 예 산 (E)	6866,939	2,032,316	1,501,840	1,358,840	1,036,773	937,170
부 족 액 (C+D-E)	△169,907	273,031	23,773	26,672	△258,704	△234,679

- 요컨대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라는 하나의 성과사업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여성발전센터별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거나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수탁자 사이의 1년 단위의 재정적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변동요인이 없는 동부·서부·중부여성발전센터 관련 예산은 그대로 두고, 금년도 중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의 추가 소요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5.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별설명서 pp.100~101)

- 이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최근 경기 침체로 이혼 가정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호대상 세대가 증가하여 이들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계상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이러한 추세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13> 2003~2004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예산편성 산출기준

구	분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대상 가정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2003	당초예산 편성시	13,121세대	34,238명	5,328세대	13,236명
2003	추경예산 편성시	13,805세대	36,240명	6,347세대	16,196명
2004	당초예산 편성시	13,805세대	36,240명	6,347세대	11,302명
2004	추경예산 편성시	18,175세대	47,318명	9,809세대	24,678명

- 또한 예산 산출기준이 되는 보호대상 인원을 보면 2003년도에 13,236명으로 잡았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그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6,196명으로 늘려 잡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당초예산 편성시 지원대상을 11,302명으로 크게 줄인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현재 세계 2위로 이혼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카드회사의 무책임한 카드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 급증이 가정해체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는데,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단기 재정계획이라 할 수 있는 예산에서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재정수요(財政需要)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더욱이 최근 경향을 볼 때, 보호대상 인원을 24,678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를 61억 9,100만원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표14> 연도별 모·부자가정 사업비 집행 결산

(단위 : 백만원,명)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 추경
결 산 액	4,776	3,965	4,289	5,184	6,190
보호대상 인원	13,803	12,744	13,121	16,196	24,678

## 6.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별설명서 p.109)

-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자”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크게 ①사용종속관계, ②근로의 대가로서의 보수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의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이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년 6월 30일부로 계약이 해지된 장애인콜택시 수탁자 김무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였고 2003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 후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권재수 외 6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도 이들이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음

<표15> 장애인콜택시 운행 수탁자 소송관련 진행사항

(단위 : 백만원,명)

구 분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	서울동부지법(민사소송)	중앙노동위(행정심판)
사 건 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종업원 지위확인 및 복직시까지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소 송 제 기 일	2004. 5. 10	2004. 7. 23	2004. 1. 27
원 고 ( 신 청 인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무겸(수탁자)	권재수 외 6명(수탁자)
피 고 ( 피 신 청 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 행 사 항	2004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장애인콜택시 수탁자를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2004. 5월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소송 제기	2004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장애인콜택시 수탁자를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04년 7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제기	2004년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 요청

-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수탁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퇴직급여 등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가는 경우 그 확정판결이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겠음

7.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사업별설명서 p.110)

-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지하철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역사에는 오는 2005년 4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비 91억 6,300만원, 감리비 25억 9,3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금년에 편성된 643억 3,300만원이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9~10월 중에 사업비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업의 중단 없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 예산과목별로 보면, 시설비가 590억원에서 681억 6,300만원으로 15.5%가 증가한 반면, 감리비는 49억 9,000만원에서 75억 8,300만원으로 무려 52%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에서 감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도 추경예산에서도 감리비로 29억원을 증액 편성한 점을 보면 예산운용에 있어 방만한 집행이 우려된다 하겠음

<표16> 2003~2004년도 승강편의시설 추경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03년도 예산편성 현황			2004년도 예산편성 현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합 계	62,333	3,000	<b>65,333</b>	64,333	11,756	<b>76,089</b>
시설비	58,600	-	<b>58,600</b>	59,000	9,163	<b>68,163</b>
감리비	3,627	2,900	<b>6,527</b>	4,990	2,593	<b>7,583</b>
시설부대비	106	100	<b>206</b>	343	-	<b>343</b>

## 8. 시립아동병원 신축(사업별설명서 p.115)

- 아동병원은 중증·무연고 장애아 치료시설로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건물을 재건축하여 효과적인 진료와 재활치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설비를 20억원 증액하여 확정된 바 있음
- 2004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3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경인지방 환경청에 의뢰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위한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최종승인까지 앞으로 1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아동병원 신축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표17> 연도별 시립병원 신축사업 투자 변경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24,902	694	-	2,054	11,077	11,077
설 계 비	1,383	689	-	694	-	-
시 설 비	22,429	-	-	1,306	10,561	10,561
감 리 비	1,050	-	-	50	500	500
시 설 부 대 비	40	5	-	4	16	15

-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연 1회밖에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처리기간도 수개월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은 인정되나, 사전에 이러한 절차 및 시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라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립아동병원 신축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애아동 진료 전문병원인 현재의 아동병원 건물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고 현 시설에 편의시설을 마련하기가 건물구조상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었는데, 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 감액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0월로 지연된 것은 치료를 받는 장애아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서울시의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9. 시립동부병원 운영보조(사업별설명서 p.117)

- 2004년 6월까지 동부병원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이 55억 4,300만원, 지출이 4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8> 2004년 6월 현재 동부병원 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진료수입	1,054	인건비	2,433
운영보조금	3,273	재료비	456
자본보조금	1,216	경비	870
		자본적지출	341
<b>합계</b>	<b>5,543</b>	<b>합계</b>	<b>4,100</b>

- 위와 같이 수입이 많게 나타난 것은 금년도 운영보조금 32억 7,300만원과 자본보조금 12억 1,600만원이 조기에 전액 지원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진료수입은 10억 5,400만원에 불과해 아직까지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실제로 1월 진료수입이 4,000만원, 2월 진료수입이 5,100만원으로 3~6월 평균 진료수입 2억 4,100만원의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기초하여 금년도 예상수익을 분석하면 서울시에서 추정한 52억 6,900만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출의 경우에도 2001~2003년의 3년간 결산을 평균한 수치가 114억 6,000만원으로 나타나 서울시에서 전망한 금년도 동부병원의 세출 규모 114억 7,500만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19> 2001~2003년도 동부병원(직영) 수지 현황 및 자립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수입	4,126	3,450	3,450
지출	10,093	12,773	11,515
재정자립도	40.9	27.0	30.0

- 다만, 그 운영상 부족액을 차입금으로 할 것인지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작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 공공의료 부문을 떠안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강남병원과 작년 10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이 되어서야 수탁운영을 시작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재무구조상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차입금보다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